

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유재목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본 조례의 제정은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
-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(안 제6조)
-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(안 제7조)
- 협력체계 구축 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발의배경

-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 메타버스, 즉 가상융합세계의 발전에 따라 가상융합산업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음
- 2024년 2월, 「가상융합산업 진흥법」(2024. 8. 28. 시행)이 제정되어 가상융합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가상융합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됨
- 메타버스 산업의 고속 성장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무분별한 산업 영역의 확장에 따른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입법정책적 근거가 필요함

나.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안 제5조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
- 안 제6조는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됨
- 안 제7조는 가상융합사업자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하고,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, 선제적인 대응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

- 안 제8조는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·학·연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소통 가능한 창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판단됨

다. 상위법령 등 검토

- 「가상융합산업 진흥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르면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·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”고 되어있고, 동조 제2항에 따르면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고 명시하고 있음
- 또한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“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”고 되어있고, 제21조에 따르면 “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”고 명시하고 있음
- 이에 상위법령에 가상융합산업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라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본 조례안은 급성장하는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와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민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
- (타당성) 본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정의 및 체계를 구축하고 중복의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며,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- (법적합성)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(종합의견) 해당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가상융합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필요성,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
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